KOSHA GUIDE

C - 56 - 2017

(12) 기타 조적작업, 용접작업, 목재가공작업, 타일작업, 도장작업, 도배작업, 중량물취급작업, 달비계 사용작업,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등 인테리어와 외장작업과 관련된 안전조치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해당 기술지침(KOSHA GUIDE)의기준에 따른다.

6. 기타 안전 준수사항

- (1) 리모델링 작업 중 주민이 거주할 경우에는 중량물의 낙하·비래에 의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작업장 주변에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견고한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크레인, 리프트, 곤돌라, 승강기 등의 양중기는 안전인증 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조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.
- (3) 해체된 잔재물, 건설자재, 건설장비 등 중량물 양중작업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, 체인 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최대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.
- (4) 강관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 시에는 KOSHA GUIDE C-30-2011(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)의 규정에 따른다.
- (5) 이동식비계 작업 시 비계의 최상부에는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고, 비계는 아웃트리거(outrigger)를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. 또한 하단부의 바퀴는 브레이크를 고정시킨 후 작업하여야 한다.
- (6) 탱크, 맨홀, 피트(Pit) 등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서 작업 시 환기설비를 설치하여 적정한 공기상태를 유지하고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7) 용접 또는 용단작업 시 용접불꽃의 비산에 의한 화재, 화상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 주위의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불꽃 비산방지포를 설치하여야 한다. 또한 작업장에 소화기를 비치한 후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.